

—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91. 12. 7 개관시의 사용료를 조정없이 현재까지 적용하여 다 도단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와 시내 유사 체육관 사용료와의 요금 차이가 현저하여 현실화하고,
- 체육행사의 정의를 하기 위하여 체육경기, 체육행사, 체육행사이외의 사람으로 규정하려 하며,
- 메식장 운영으로 서민층에 실비로 장소를 제공하면서 세입을 증대 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국민생활관 사용료 침수요불표 조정
- 종목 신설 및 체육경기에 대한 진의를 명확히 규정

#### 4. 검토의견

- 제8조 (정의)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체육행사와 체육경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13호 항목은 추가하고,
-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사용료는 91. 12. 7 개관시 사용료를 조정없이 현재까지 적용함으로 타 도단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와 시내 유사체육관 사용료와의 요금차이가 현저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압박예고된 사항이지만, 효율인산에 관한 사항임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됨.